



NEWS LETTER OF KOREA CUSTOMS CONSULTING LLC

2019 Aug



본 자료의 무단복제 및 무단도용을 금지합니다.

목 차

· **(일본)** -----3page

1. 일본의 수출규제
2. 정부, 日 대체품에 '할당관세' 검토
3.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 **(FTA)** -----8page

1.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납세자 권익보호 차원
2.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한국과 2021년까지 FTA 협상 타결 목표"

· **(관세)** -----12page

1. 韓, WTO 판정 미이행 美에 4,000억 보복관세 추진
2. 中 상무부, 한국 등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 **(환급)** -----15page

1. 관세청, 중소기업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생략

· **(기타)** -----22page

1. 관세청,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 "면세 초과 자진신고 유리"
2. 폐 플라스틱, 동남아 수출은 줄었는데 일본서 온 수입은 늘어

일본의 수출규제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반일감정이 겹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여름휴가지를 일본으로 계획하셨던 분들 중 다수가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일본국적 연예인들의 국내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어떤 제품에 대해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 수출규제의 원인

- 일본입장 :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또한 강제노역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수출규제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국입장 : 일본이 강제노역 문제에 대해 언급한것으로 보아 전문가들은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보복으로 수출규제를 한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의 정치적 노림수로 보인다고도 언급했습니다.

* 잠깐!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시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1965년 한국과 일본정부가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졌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한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국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5월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은 2019년 4월 1일부로 개명)이 한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강제매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일본의 산업과 무역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은 7월 4일 대한민국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세 가지 품목에 대한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품목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리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는 감광제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에 사용됩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입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이번 수출규제로 인하여 이들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90일 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잠깐! 일본의 수출규제 방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일본의 수출규제 방식에는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 규제"가 있습니다.

리스트 규제란 사전에 작성해둔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에 없더라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목재, 식료품을 제외한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치올 규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가 받는 영향

한국 기업들은 현재 일본에서 수출을 규제한 품목들에 대해 전적으로 일본 제품에 의존해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작년 수입한 리지스트의 93.2%는 일본산이었으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84.5%가 일본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 악영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60%는 일본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 日 대체품에 '할당관세' 검토

정부가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반도체 소재 수출 관련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니라 품목 기준으로 적용돼, 시행하게 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할 단기 대책들로, 기업들의 주요 화학물질 연구개발(R&D)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실증 테스트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R&D 인력의 재량근로제 관련 지침도 이달 말 내놓을 예정입니다.

(출처:SBS CNBC)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일본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약 한달만인 2019년 8월 2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앞선 일본 수출규제 칼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캐치올 규제의 한 종류이며 7월 4일에 발표한 일본의 수출규제(리스트 품목 규제)와는 반대로 리스트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에서 수출규제가 가능하므로 현재 그 대상을 1100가지로 추리고 있으나 규제품목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업체들이 난감한 상황을 겪고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의 의미와 한국이 제외될 시 영향을 받는 품목군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란 일본정부가 물자, 소프트웨어, 기술 등 전략물자를 간소한 절차만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국가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즉, 일본이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국가에 수출할 때 받아야하는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일본은 한국에 대해 신뢰가 낮아졌으므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더욱이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은 한국을 제외한 총 26 개국입니다.

●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대상 주요품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석유화학 제제품, 공작기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광물성 생산품, 플라스틱제품 등 목재, 식품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가짓수가 상당하며 이 중 80%가 일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달 전 처음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3 가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을 수출규제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지금은 한국 자체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림으로써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납세자 권익보호 차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품목분류로 세액경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후에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한다.

특히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경정하는 경우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까지 사후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했다.

적용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도 벌금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고려해 벌금·과태료 이중처벌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는 다음연도 6월 중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해당된다.

신고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의 20%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시 10~7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 50 억원을 초과하면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를 벌금으로 내야하며, 명단이 공개된다.

(출처:아시아경제)

★ KCC 1 분강의

원칙적으로 FTA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하나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 년이내에 사후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사후적용기한 이후에는 FTA 세율 적용이 불가했다.

그러나 2020 년 4 월 1 일부터는 품목분류가 달라짐으로 인해 세액경정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 년이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45 일까지는 FTA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후적용 기간은 품목분류에 따른 세액경정에 한하여만 적용되므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다.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한국과 2021년까지 FTA 협상 타결 목표"

최근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올해 안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FTA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과도 2021년까지 FTA 협상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브라질 경제부의 루카스 페하스 대외무역국장은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 브라질 대외무역협회(AEB) 임원들을 만나 EU 에 이어 EFTA 와 올해 안에 FTA 체결에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FTA 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비(非) EU 회원국 모임이다.

메르코수르는 지난 2017년 6월 EFTA 와 자유무역협상을 시작했으며, 올해 안에 두 차례 실무협상이 예정돼 있다.



파라과이·우루과이·브라질·아르헨티나(왼쪽부터)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 국기

페하스 국장은 "메르코수르가 올해 안에 EFTA 와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블록의 크기는 작아도 유럽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매우 높은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메르코수르가 2021 년 말까지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메르코수르 협상은 지난해 5 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그동안 두 차례 실무협의를 이뤄졌다. 한-메르코수르 교역 규모는 2011 년 182 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글로벌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해 지난해는 102 억 달러에 그쳤다.

메르코수르는 1991 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 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2012 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인구의 70%(2 억 9 천만 명), 국내총생산(GDP)의 80% (2 조 8 천 300 억달러) 를 차지한다

(출처:연합뉴스)

★ KCC 1 분강의

2004 년 4 월 1 일 발효된 한-터키 FTA, 2013 년 5 월 1 일 발효된 한-칠레 FTA, 2016 년 7 월 15 일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 순으로 한국이 중남미와 FTA 를 맺어왔다. 그 밖에도 한-중미 FTA 가 2017 년에 가서명 후 발효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중남미와의 FTA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있으며 FTA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기업도 더욱이 증가되어 원활한 교역의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관세

韓, WTO 판정 미이행 美에 4,000 억 보복관세 추진

미국이 지난해 정부와의 WTO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정부가 3억 5,000만 달러(4,130 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WTO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애초 밝힌 이행 기간 1년을 넘기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2017년 4월 연례 재심에서는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상향했다.

미국이 한국산 유정강관에 내린 반덤핑관세율
(단위:%)

	기존	신규
넥스틸	8.04	24.92
현대제철	5.92	13.84
세아제강	3.80	2.76

이에 정부는 2014년 12월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2017년 11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WTO 회원국은 DSB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 개월)을 합의해야 한다. 당초 미국은 1 년의 이행 기간을 갖겠다고 밝혔지만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판정 결과를 반영해 덤핑률을 재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WTO 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연간 3 억 5,000 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추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분쟁을 벌여야 한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미국 셰일 가스 개발 붐에 힘입어 2013 년에만 8 억 1,800 만 달러어치가 수출됐다.

(출처:서울경제)

中 상무부, 한국 등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중국이 한국의 포스코를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스테인리스스틸 빌렛과 열간압연 스테인리스스틸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다. 한국 포스코는 23.1%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나 중국 상무부는 포스코의 가격약속 제안을 받아들여 약속한 가격보다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집행 시점은 오는 8월 23일부터 5년간이다.



(좌)스테인리스스틸 빌렛



(우) 열간압연 스테인리스스틸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했으며 지난 3월 잠정 판정을 내놓았다. 한국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날 반덤핑 관세율을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서울경제)

환급

관세청, 중소기업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생략

8 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8 월 1 일부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 4단계 → 2단계 축소 >

현행 환급신청 절차	개정 후 환급신청 절차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전체 소요량(내국+수입물품)을 계산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전체 소요량(내국+수입물품)을 계산
② 전체 소요량 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산출	< 생략 >
③ 해당 비중에 해당되는 물량 만큼 소요량에 안분	< 생략 >
④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파악하여 환급신청	②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간편히 환급 신청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세환급액 조정 대상 원재료는 107 개로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4 단계에서 2 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출처:뉴스 1)

★ KCC 1 분강의

수입원재료에 대해 환급신청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2 가지는 다음과 같다.

-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총 87 가지)
-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총 107 가지)

수입원재료의 세번이 상기에서 열거하는 세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3 개월이내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사용하거나, 평균세액을 계산하여 안분하여야 하며 비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대상 신청을 사전에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기 2 가지를 모두 사전에 체크한 후 환급을 진행해야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2)번에 대해 절차를 생략하여 좀 더 간소하고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번에 해당하는 107 가지 세번은 아래 별첨을 통하여 확인가능하다.

[별첨]

서울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명	비고	기존 연번	'16년 이전 품목(HSK)
1	0404102129	기타 변성유장(유당·단백질·무기질 전부 또는 일부 제거)		1	0404102129
2	0404102199	무기질을 제거한 기타 변성유장		2	0404102199
3	0904210000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별표 1	3	0904210000
4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		4	0904220000
5	1003901000	맥주보리		5	1003901000
6	1005909000	옥수수(기타)		6	1005909000
7	1102909000	곡물가루(기타)		7	1102909000
8	1107100000	볶지 않은 맥아		8	1107100000
9	1518009090	동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기타)		9	1518009090
10	1701142000	그 밖의 사탕수수당(당도 98.5 도 초과)		10	1701142000
11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 주정(알코올 용량 無關)		11	2207200000
12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것)		12	2401103000
13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별표 1	13	2401201000
14	2401202000	버어리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14	2401202000
15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15	2707300000
16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별표 1	16	2707999000
17	27090010	석유	별표 1	17	27090010
18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18	2710123000
19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별표 1	19	2711190000
20	2804611010	태양전지 제조용 잉곳(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0	2804610000
21	2804611090	태양전지 제조용 규소(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0	2804610000

22	2804619000	기타 규소(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0	2804610000
23	2804690000	규소(기타)	별표 1	21	2804690000
24	2809201090	인산(기타)		22	2809201090
25	2822001091	산화코발트(이차전지 제조용)		23	2822001091
26	2825901020	산화텅스텐		24	2825901020
27	2849200000	탄화규소		25	2849200000
28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26	2902191000
29	2902420000	메타-크실렌		27	2902420000
30	2902430000	파라-크실렌		28	2902430000
31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29	2903150000
32	2905122090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기타)		30	2905122090
33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31	2905161000
34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2	2905193000
35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별표 1	33	2905310000
36	2905391000	1,4-부탄디올		34	2905391000
37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35	2918113000
38	2921439099	톨루이딘과 유도체(기타의 기타)		36	2921439099
39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별표 1	37	2926100000
40	2929109000	이소시아네이트(기타)		38	2929109000
41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39	2932110000
42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40	2933710000
43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1	3204160000
44	3503001010	젤라틴		42	3503001010
45	3505105010	에테르화전분 또는 에스테르화전분(식품용)		43	3505105010
46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별표 1	44	3811210000

47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펜(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별표 1	45	3824909090
48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hex산[HCH(ISO)][린데인(ISO, INN) 포함]을 함유한 것	별표 1	45	3824909090
49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별표 1	45	3824909090
50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폰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별표 1	45	3824909090
51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별표 1	45	3824909090
52	3824999090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별표 1	45	3824909090
53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46	3904100000
54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47	3906901000
55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48	3908102000
56	3910009010	실리콘오일	별표 1	49	3910009010
57	3912110000	초산셀룰로오스(가소화하지 않은 것)		50	3912110000
58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51	3920620000
59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		52	3921191010
60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3	3921902000
61	4002190000	SBR·XSBR(기타)		54	4002190000
62	4002209000	부타디엔 고무(BR)(기타)		55	4002209000
63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6	4002399020
64	4011101000	승용자동차 고무타이어(래디알 구조의 것)		57	4011101000
65	5509321000	합성스테인플섬유사(아크릴의 복합사나 케이블사)		58	5509321000
66	5902100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59	5902100000

67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60	5902200000
68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별표 1	61	7007191000
69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별표 1	62	7112991000
70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63	7202600000
71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제)	별표 1	64	7403110000
72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별표 1	65	7410110000
73	7502109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기타)		66	7502109000
74	760410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봉		67	7604101000
75	7801109000	정제한 납(기타)		68	7801109000
76	7801992090	납의 괴(기타)		69	7801992090
77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99.99% 이상인 합금하지 않은 아연		70	7901110000
78	8407349000	1,000cc 초과 피스톤엔진(기타)	별표 1	71	8407349000
79	8408202000	1,0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차량용 디젤엔진		72	8408202000
80	8408909030	제 8429 호용 기타 엔진		73	8408909030
81	8409911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	별표 1	74	8409911000
82	8409992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별표 1	75	8409992000
83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 펌프	별표 1	76	8413304000
84	8431200000	제 8427 호의 기계의 전용 또는 주요 부분품		77	8431200000
85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별표 1	78	8481801090
86	8528521000	액정모니터(제 8471 호용으로 설계된 것)		79	8528591090
87	8528529000	기타 모니터(제 8471 호용으로 설계된 것)		79	8528591090
88	8528591090	기타 영상모니터 (기타)		79	8528591090
89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부분품		80	8529909400
90	8542314090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기타)	별표 1	77	8431200000
				80	8529909400

				81	8543909090
91	8542324090	메모리(기타)	별표 1	77	8431200000
				80	8529909400
				81	8543909090
92	8542334090	증폭기(기타)	별표 1	77	8431200000
				80	8529909400
				81	8543909090
93	8542394090	기타 집적회로(기타)	별표 1	77	8431200000
				80	8529909400
				81	8543909090
94	8542904090	집적회로 부분품(기타)	별표 1	77	8431200000
				80	8529909400
				81	8543909090
95	85439090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기타)		81	8543909090
96	8708290000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82	8708290000
97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별표 1	83	8708309000
98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별표 1	84	8708400000
99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5	8708501000
100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86	8708700000
101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별표 1	87	8708940000
102	8708951000	에어백		88	8708951000
103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별표 1	89	8708999000
104	90138019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별표 1	90	9013801930
105	9013801990	액정디바이스(기타 텔레비전용)	별표 1	91	9013801990
106	9018399000	주사기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92	9018399000
107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별표 1	93	9032899090

기타

관세청,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 "면세 초과 자진신고 유리"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의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40% 가산세(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돼지 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면서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물과 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 축산물 가공품을 절대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세금부담 예시 : 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달러 물품 구입 시]

▶ 기본세액 : $(\$1,000 - \$600(\text{면세한도}) \times 20\%(\text{간이세율}) \times 1,100(\text{환율}) = 88,000\text{원}$

① 자진신고 시 세액 : $88,000\text{원} - (88,000\text{원} \times 30\%(\text{감면율})) = 61,600\text{원}$

② 미신고 적발 세액 : $88,000\text{원} + (88,000\text{원} \times 40\%(\text{가산세율})) = 123,200\text{원}$

※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88,000\text{원} + (88,000\text{원} \times 60\%(\text{가산세율})) = 140,800\text{원}$

(출처:이데일리)

폐 플라스틱, 동남아 수출은 줄었는데 일본서 온 수입은 늘어

불법 쓰레기 수출 논란으로 폐 플라스틱 국제이동이 위축된 가운데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수출한 폐 플라스틱 물량이 현저히 줄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물량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불법 수출 논란을 계기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쓰레기 유입을 막고 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낸 폐기물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폐기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량은 3만 5천 215t으로 작년 동기(2만 6천 397t) 대비 3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폐기물로 승인받고 수출입된 플라스틱의 물동량이다. 이에 비해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한 폐 플라스틱은 114t으로 작년 동기 1천 714t의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베트남의 경우 같은 기간 폐 플라스틱 수출량이 2 만 3 천 335t 에서 5 천 815t 으로, 인도네시아는 502t 에서 98t 으로 각각 4 분의 1, 5 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중국은 아예 2018 년 1 월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이 막히면서 각국이 동남아로 폐기물을 수출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고,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쓰레기 수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 증폭된 측면이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본 플라스틱은 대부분 처리목적이 아니라 합성섬유나 펠릿 등으로 가공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이 폐 플라스틱 수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곳인 데다 폐기물이 생산지나 유통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사능에 오염돼 있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폐기물 자체의 국제이동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는 물량이 훨씬 빨리 줄고 있다.

올 상반기 폐 플라스틱을 포함해 일본에서 수입된 전체 폐기물은 64 만 1 천 134t 으로 작년 동기 68 만 3 천 339t 보다 6.1% 줄었다.

하지만 중국과 동남아에 수출한 폐기물은 같은 기간 29 만 7 천 67t 에서 23 만 4 천 97t 으로 21.1% 줄었다.

(출처:연합뉴스)